국민안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공사비 정상화 건의

2018.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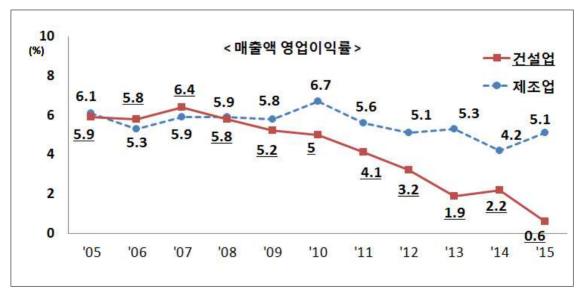
▋ 목 차 █───

| □ 현 황··································· |
|------------------------------------------------------------------|
| □ 문제점 |
| 1. 최근 15년간 예정가격 대폭(9.0%~14.6%) 하락 |
| □ 건의사항 |
| 1. 덤핑입찰 낙찰배제 가격기준(순공사원가) 법제화 ··································· |
| 【참고】 공사비 관련 문제점, 개선방안 및 파급효과 14 |

국민안전 및 일자리 칭출을 위한 공공공사비 정상화 건의

□ 현 황

- 건설산업은 국민경제 비중이 크고 생산 및 고용유발 효과*가 높아 저성장 극복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큰 산업
 - * 건설업 생산유발계수('14) : 2.225 (전산업 평균 1.891) 건설업 고용유발계수('14) : 10.2 (전산업 평균 8.7)
- 해외에서는 세계 최고층 빌딩*과 초고난이도 공사**를 완공하고, 누적수주액 7,000억 달러를 달성('15)하는 등 건설강국 위상 제고
 - * 두바이 부르즈칼리파 (삼성물산, 828m/163층)
 - ** 터키 유라시아 해저터널 (SK건설, 5.4km/'16 ENR紙 선정 세계최고터널) 등
- 그러나, 국내에서는 공사비 부족에 따른 지속적 수익성 악화 및 건설현장 안전·고용여건 악화 등 산업기반 붕괴 위기감 팽배
 - 건설업 매출액 영업이익률 : ('05) 5.9% → ('15) 0.6%(1/10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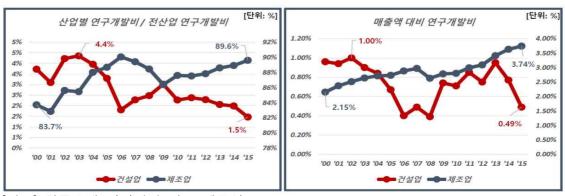
[자료] 건설업: 대한건설협회(건설업 경영분석), 제조업: 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

- 건설업 **산재 천인율** : ('06) 7.05% → ('15) 7.48%(전산업 평균 1.49배)



[자료] 안전보건공단(2016), '2015년도 산업재해 분석' 자료를 재구성

-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건설현장의 내국인 일자리가 줄면서 비숙런 외국인력*으로 대체 심화
 - * 합법 외국인 근로자 : ('14) 4.7만명 → ('15) 4.9만명 → ('16) 5.1만명 불법 체류근로자(산업인력공단 추정) : ('14) 21.1만명 → ('16) 22.4만명
- 토목공사업체의 폐업증가, R&D 투자축소 등으로 건설 인재 양성 및 기술개발 여력 상실
 - 최근 10년간('08~'17년) 공공공사를 주로 수행하는 건설업체 1천 5백개사* 폐업으로 4만 5천여개의 일자리 감소 추정
 - * 전체 건설사의 10%수준(토건 809개, 토목 1,103개) [자료] 공공공사비 산정 및 관리 실태와 제도적 개선방안('18.3, 건설관리학회, 건산연 TFT)
 - 건설업 R&D 투자비율: ('02) 1.00%→('15) 0.49%(제조업 3.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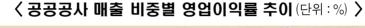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 자료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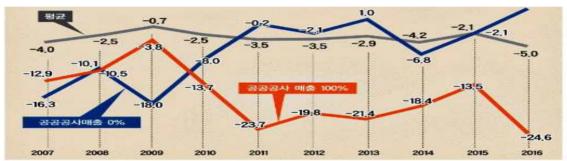
- 공사비 부족으로 공공공사 적자는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황
 - 주택부문에서 벌어서 SOC 적자를 메우는 현실

| 구 분 | 토 목 | 플랜트 | 주택(건축) |
|-----|--------|--------|--------|
| A건설 | △2,631 | △2,990 | 9,222 |
| B건설 | △2,344 | △123 | 6,685 |
| C건설 | +3 | △5,487 | 9,269 |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아시아투데이, 2018.3.29)

- 공공공사만 수행하는 건설사(3,121개사)의 '16년 평균 영업 이익률은 -24.6%





- 공공공사 10건 중 4건이 적자공사
- → '14년~'17년 4월까지 준공된 공공공사 **129건의 준공 실행률** 조사 결과, 48건(37.2%)이 '적자' 기준인 100% 상회

〈최근 3년간 준공된 공공 토목공사 실행률(자료:대한건설협회) **〉**

| 구 분 | 건 수 | 평 균 | 표준편차 | 최 고 | 최 저 |
|--------|-----|---------|--------|------|------|
| 적격심사 | 44 | 103.06% | 11.78% | 147% | 77% |
| 수의계약 | 8 | 101.52% | 8.82% | 111% | 89% |
| 최저가낙찰제 | 12 | 114.81% | 6.04% | 126% | 105% |
| 턴키계약 | 1 | 126% | 0.00% | 126% | 126% |
| 턴키대안입찰 | 7 | 115.66% | 11.33% | 140% | 108% |
| 합계 | 72 | 106.39% | 11.86% | 140% | 77% |

- 실제 발주된 OO청사 신축공사에 대한 원가전문기관 공사비 분석결과(국회 공사비정상화 정책토론회('18.5.9) 발제2 참조)
- · 도면·내역누락, 이윤 임의삭감 등으로 **발주금액이 7%나 과소산정**
- · 최저가로 계약하는 유사 민간공사 대비 공사비가 4.9%~13%나 부족

- 건설산업 수익성 저하는 하도급·자재·장비 등 **연관산업 경영** 전반을 악화시켜, 원·하도급 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
 - * 대형건설사의 경우 1사당 하도급 협력업체 150~700개사, 자재구매 500~ 3000개사, 연관 근로자 10,000~20,000명에 달함(가족포함시 40,000~80,000명)
-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공사비 수준(m²당 건축비용)이 163만원으로 영국, 미국, 일본 등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침
 - **주요도시 건설프로젝트 평균 이윤율**도 **서울이 3%**로 가장 낮은 수준* * 도하. 요하네스버그. 쿠알라룸푸르. 상파울루 등은 10%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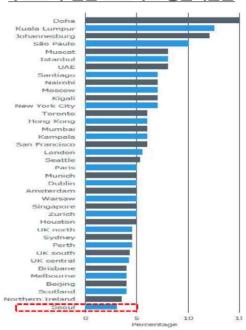
세계 주요국가 m'당 건설비 비교(일본 SFC* 조사)

('16년기준, 단위 : 만원/m²)

| | (10년/1군, 단위 · 단권/III | | | | | | |
|----|----------------------|-----|----|---------|-----|--|--|
| 순위 | 국가명 | 비용 | 순위 | 국가명 | 비용 | | |
| 1 | 영국 | 459 | 16 | 아일랜드 | 243 | | |
| 2 | 미국 | 433 | 17 | 이탈리아 | 236 | | |
| 3 | 스위스 | 418 | 18 | 카타르 | 228 | | |
| 4 | 홍콩 | 385 | 19 | 싱가폴 | 211 | | |
| 5 | 덴마크 | 379 | 20 | 사우다아라바아 | 204 | | |
| 6 | 일본 | 369 | 21 | 캐나다 | 188 | | |
| 7 | 노르웨이 | 343 | 22 | UAE | 175 | | |
| 8 | 스웨덴 | 321 | 23 | 슬로베니아 | 173 | | |
| 9 | 벨기에 | 289 | 24 | 그리스 | 171 | | |
| 10 | 마카오 | 288 | 25 | 스페인 | 164 | | |
| 11 | 뉴질랜드 | 279 | 26 | 한국 | 163 | | |
| 12 | 네덜란드 | 269 | 27 | 우크라이나 | 163 | | |
| 13 | 프랑스 | 268 | 28 | 크로아티아 | 160 | | |
| 14 | 호주 | 265 | 29 | 오만 | 157 | | |
| 15 | 독일 | 248 | 30 | 슬로바키아 | 151 | | |

* Sato Facilities Consultants(글로벌 건축설계컨설팅 업체)

주요도시 건설 프로젝트 평균이윤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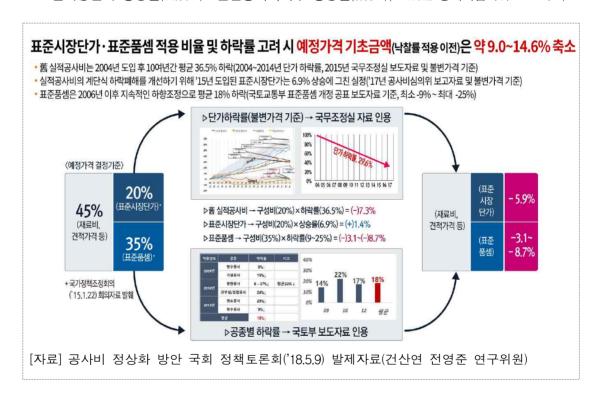
출처 : Turner & Townsend, International construction market survey 2016

□ 문 제 점

1 최근 15년간 예정가격 대폭 하락(9.0%~14.6%)

| 구 분 | 등락률(A) | 공사비 비중(B) | 등락효과(A×B) | |
|-----------------|---------------------|-----------|-------------|--|
| 표준시장단가 | -29.6% | | -5.9% | |
| 실적공사비('04~'14) | -36.5% [*] | 20% | -7.3% | |
| 표준시장단가('15~'18) | +6.9%** | | +1.4% | |
| 표준품셈 | -9~-25% | 35% | -3.1~-8.7% | |
| 재료비 등 | - | 45% | - | |
| 계 | | 100% | -9.0~-14.6% | |

- * 2015년 국무조정실 보도자료(불변가격 기준)
- ** 표준시장단가 상승률(14.96%)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8.09%)(※'17.12 공사비심의위 보고자료)



2 이에 따라 공공 발주제도 (실질)낙찰률 하락

○ 적격심사제 낙찰하한율 17년간 고정 ⇒ 실질낙찰률 하락

- 중소건설업체가 주로 수주하는 **적격심사제**(300억원미만) **낙찰 하한율**이 공사규모별 **예정가격**의 **80~87.8%**로 17년간 고정

- 예정가격 자체가 상당부분 삭감된 반면 낙찰률은 고정되어 실질낙찰률이 10%p 내외 하락
 - ※ 건설공사비지수(건기연 발표)는 자재 기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17년간('00년~'17년) 약 108% 상승
 - 실질낙찰률 하락 예시
 - 예정가격 하락: '04년 100억원 → '<u>18년 85.4억~91.0억원</u>*
 * 15년간 예정가격 하락율(-9.0~-14.6%) 적용
 - **낙찰금액 하락***: '04년 80억원 → <u>'18년 68.3억~72.8억원</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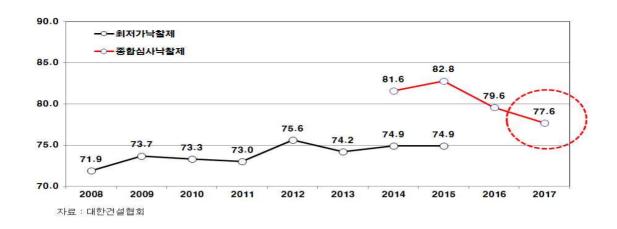
 * 낙찰률 80% 적용시
 - ⇒ **실질낙찰률은 80% → 70.6%**(68.3~72.8%의 평균)로 하락
- 특히, 100억~300억원 구간은 실제 시공단가에도 못미치는 표준시장단가 적용('17.1~)으로 공사비 약 4.5% 획일적 삭감
 - 적격심사대상공사의 경우 표준시장단가 공종에 대해 종심제 공사와 같은 투찰 하한이 없어 낙찰을 위해 낙찰하한율까지 감액 투찰 불가피



주: 표준시장단가 적용 비중 25.4%, 낙찰률 80%, 표준시장단가는 표준품셈의 82% 적용

○ 종합심사낙찰제 낙찰률이 최저가제 덤핑수준으로 하락

- 종합심사낙찰제 (300억원이상)는 저가투찰로 인한 **덤핑 부작용** 등 최저가낙찰제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16.1.1)
- 그러나, 저가입찰을 유도하는 다양한 심사기준 때문에 종심제 평균낙찰률이 지속하락, '17년 평균낙찰률(77.6%)이 최저가 낙찰제(약 75%) 수준에 근접



○ 턴키. 기술제안 등 기술형 입찰 유찰비율 폭증

- 공사비 부족으로 인한 업체 참여기피로 기술형입찰 절반이상 유찰* * 연도별 유찰비율 : ('12) 6.8% → ('14) 30.6% → ('16) 53.1% → ('17.8) 52.3%
-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또한 예산절감 중심 가격협상 절차 운영* * 협상기준가격으로 기술형입찰 평균낙찰률이 아닌 종심제 평균낙찰률 적용

참 고 미국. 일본의 낙찰률 사례

- ◎ 미국
- 미연방도로청(FHWA)의 평균낙찰률: 93%~107.5%('11년)
- 미네소타 교통부(DOT)의 평균낙찰률 : 93%('05~'17년)
- 일본
- **공공공사** 평균 낙찰률은 **국토교통성 91.8%**, **지자체 92.5%**('15년)

3 공기연장 추가비용 * 미지급 만연

- *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 소요되는 비용 ⇒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에 의거 공사금액 증액필요
- 발주자 귀책에 따른 공기연장 추가비용 발생 경험업체 61.6%
 - 이 중 추가비용을 청구조차 하지 못한 업체가 43.8%, 청구한 업체 중 추가비용을 받지 못한 업체는 64.6%에 달함
 - ※ 출처: 공기연장 간접비 관련 불공정행위 조사결과('17년 건산연, 감사원 의뢰)
 - → '17.10월 현재 공기연장 추가비용 미지급으로약 179건, 청구액기준 6,100억원 규모 소송 진행 중
 - * 자료 : 국회 국정감사('17.10월, 추경호의원)
 - 나 ※ 24개 공공발주기관('17.10월 진행중인 분쟁 및 '15년1월이후 완결된 분쟁)

- 최근 정부대책은 공기연장 미지급 문제를 더욱 악화
 - 기재부 예규 개정('16.12.30)을 통해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사유를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한정한 결과.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공기연장시 이로 인한 간접비 등을 시공사가 부담하는 불합리한 결과 발생
 -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시행('17.1.1)으로 불합리한 규제* 양산
 - * 공기연장 비용 신청횟수(1회) 및 신청시기(준공일 전년도 5.31) 제한
 - * 공기연장 비용 지급기간 한정('17.1.1 입찰공고 이후분) 및 지급항목 제한(일반관리비 및 이윤 배제) 등

⟨ 감사원, 기재부에 개선통보('18.3) ⟩ ─

● 발주자의 귀책 사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할 경우 **공사기간연장 비용 산정 방법**과 **총사업비 조정신청 시기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등 공기연장 비용 적절지급 방안을 마련할 것

4 발주기관의 불공정관행 지속

○ 공사비 부당삭감, 추가공사 비용전가 등 부당특약, 이의제기 불인정·보복조치 등 각종 불공정관행이 공사비 부족 초래

┌〳️ 감사원 조사결과('18.3) ♪─

- 건설업체의 64.6%가 발주자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하였고, 발주자 불공정행위 발생 원인으로 공사비 산정제도의 문제(63.8%)와 발주자의 과도한책임전가(44.8%) 등을 꼽았으며
- 이중 15%만이 법적·제도적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
- 대응하지 못한 업체(85%)들은 계약이행 단계에서 원활한 관계 유지 (61.7%) 및 향후 불이익을 우려(58.1%)해 대응하지 않았다고 답변

5 공공공사 가격 산정기준 불합리

① 조달청 시설공사 자재가격 반영수준이 매우 낮음

○ 조달청은 **시설공사 자재가격을 별도로 조사・결정**하고 이 가격을 계약 위임된 공사에 적용하거나 설계가격의 적정성 검토시 활용

- 그러나, 동 시설공사 자재가격은 관급자재의 대량구입 등 양호한 구매조건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어서 실제 건설업체가 구매하는 시중 자재가격보다 매우 낮은 상황
 -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시중물가지 가격 비교(예시)

| 품 명 | 규 격 | 단위 | 조달청 가격정보 (A) | 물가지 평균가격 [*] (B) | 대비율 (A/B) |
|--------------------|--------------------------------------------|-----|--------------------|---------------------------------|--------------|
| 이형철근 |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 M/T | 673,181 | 717,333 | 93.8% |
| 레미콘 | 레미콘, 25-21-120 | m³ | 60,454 | 68,388 | 88.4% |
| 닥 타 일 및 일 빈 피복관 | 수도용덕타일주철관, ø100㎜×6m, 2종, KP조인트직관 시멘트라이닝 | 본 | 123,036 | 149,740 | 82.2% |
| 혼합골재 | 보조기층 40mm | m³ | 9,545 | 12,833 | 74.4% |
| 석고보드 | 석고보드, 평보드, 9.5×900×1800㎜(매) | 매 | 2,970 | 4,093 | 72.6% |
| 흄관 | KSF4403, 400×2.5m | 본 | 50,445 | 65,100 | 77.5% |

- * 2018년 2월 거래가격, 물가정보, 물가자료 평균가격 기준(부가세 제외)
- 더욱이 입찰을 통해 **낙찰률까지 적용**되면 실구매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계약되어, 개별현장 특히 자재구매량이 적은 중소규모현장은 적자가 불가피하고 공사부실화 우려
 - ※ 조달청 시설자재가격은 타 발주기관에서도 적용하고 있어 파급영향이 큰 상황

② 일반관리비가 실제 필요금액에 미달

- 조달청은 시설공사 예정가격 작성시 기초가 되는 '원가 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마련·발표하고 있으나, 현실을 반영하기에 미흡
- 공사기간의 장기화, 각종 규제 증가 등으로 인해 일반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건설환경 변화에 부합 하도록 제경비율 조정 필요

- 특히, 100억미만 공사를 주로 수주하는 **6등급이하 업체**의 실제 일반관리비율은 법적상한인 **6%를 크게 초과**

| 구분 | 시공능력평가액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6등급 | 180억원~120억원 | 8.27% | 8.27% | 8.02% | 8.42% | 10.21% | 8.96% |
| 7등급 | 120억원~ 82억원 | 8.09% | 7.79% | 6.59% | 7.79% | 7.85% | 7.78% |
| 등급외 | 82억원 미만 | 8.09% | 8.31% | 9.12% | 7.25% | 7.57% | 6.63% |

※ 대한건설협회 실적신고자료 활용(2015)

6 개별 정부정책 추진에 따른 공사비 감액 문제

① 사후정산제 시행 등으로 직접공사비 삭감

- 사회보험료 등 일부 항목은 **사후정산제** 도입으로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투찰시 **100% 반영**해야 함
 - 그 결과, **낙찰률이 고정된 적격심사제**에서는 풍선효과로 인해 **직접공사비 삭감***이 **불가피하여 품질·안전 악영향**
 - * 100억원 공사의 경우 약 3,450만원(직접공사비의 0.6%)의 직접공사비가 삭감됨
 - 건설기술진흥법상「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도 낙찰률 적용 배제예정,「퇴직공제부금」도 이와같음(감사원 통보*)
 - * 공공발주 건설공사 불공정관행 점검('18.3)
- 또한, 사회보험료 중 국민연금* 등 가입대상 확대에 따른 보험료 부담증가로 진행 중인 공사의 경우 보험료 부족 예상
 - * 월 20일 → 월 8일이상 근로자('18.7.1 시행)

② 법정 근로시간 단축(68→ 52시간) 및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근로시간 단축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진행중인 공사의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 및 제반비용 반영 조치 미흡

□ 건의사항

1 덤핑입찰 낙찰배제 가격기준(순공사원가) 법제화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의 합계액으로서 부가세 포함금액)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에서 **배제** ※ 박명재 의원 관련법안 발의('18.3.22, 국가계약법 개정안)

2 중소규모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배제 법제화

- 예정가격 산정시 **300억원 미만 공사는 표준시장단가 적용배제*** ※ 박명재 의원 관련법안 발의('18.3.22. 국가계약법 개정안)
 - * 표준시장단가는 실제 시공단가 및 표준품셈보다 현저히 낮아(88% 및 82%수준) 공사비 과소산정의 주된 원인이 되므로, 중소규모 공사에는 적용 자체를 배제할 필요

3 적격심사제 낙찰하한율(17년간 고정) 10%p 상향

- 17년간 고정되어 있는 낙찰하한율(80~87.8%)을 지난 10년간 가격 하락에 따른 실질낙찰률 하락을 고려하여 10%p 상향
 - ※ 필요시 민관합동 공사비 적정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사비 현황, 시공업체 손익, 중소업체 지원 등을 종합검토하여 적정상향 비율 결정

4 최저가낙찰제 수준으로 떨어진 종합심사낙찰제 낙찰률 정상화 ('17년 평균낙찰률 77.6% → 90% 수준)

- 최저가제의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인한 **시공품질 저하**를 개선키 위해 도입('16)된 **종심제**의 취지에 맞도록 낙찰률 정상화* 필요
 - * 【종심제 심사기준 개선】 덤핑기준 상향(70—80%), 균형가격 산정방식, 공종별 단가심사 기준 개선, 동점자 처리기준 개선, 고난이도 공사 단가심사 실시 등

5 기술형입찰 제도 합리적 개선

-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전환시 **최소 협상가격 산정기준 개선**
 - 협상기준가격으로 종심제 평균낙찰률이 아닌 **기술형입찰** 평균낙찰률 적용
- 물량내역서 조정시 '설계서에 조정사유 명시' 의무화
 - 발주기관이 물량내역서 내용(품목, 규격, 수량)을 조정할 경우 '설계서에 조정사유 명시'의무화 및 계약금액 조정 허용

6 공기연장 추가비용 반영의무 법제화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추가 소요비용을 계약금액 조정시 반영토록 법률에 명시
- 총사업비관리지침 재개정 보완
 - '신청횟수(1회)' 및 '신청시기(준공일 전년도 5월31일)' 삭제
 - 감액과 동일하게 증액 조정시에도 일반관리비, 이윤 포함
 - '17.1.1이전 입찰공고분에도 개정 지침 적용
 - 조기준공시 공사비 **감액정산 의무화** 규정삭제 또는 설계변 경으로 공사량을 감축한 경우로 한정
 - 발주기관 자율조정 대상에 공기연장 계약금액조정 포함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일정 비율**의 예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 신설(국가재정법 등)

☑ 공공 발주기관 불공정 행위 근절 법제화

○ 공사비 부당삭감 금지(삭감내역 공개), 부당특약·조건 설정 금지(해당부분 무효화) 및 이의신청 허용 등 법률에 명시 ※ 정병국 의원, 추경호 의원 관련법안 각각 발의('18.4.17, 4.27 국가계약법 개정안)

8 공공공사 가격 산정기준 개선

① 조달청 시설공사 자재가격 적용 개선

- 조달청 시설공사 자재가격은 '관급자재' 구매시에만 활용하고 '사급자재'에 대해서는 시중물가지 가격을 적용도록 개선 요망 ※ 기재부 계약예규에 명시하는 방안 검토 필요
- ② 일반관리비율 현실화(상향 조정): 6%→8%

9 정부 정책변화 등에 따른 추가 수요비용 반영

① 사회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지급 개선

- 공사입찰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사회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등을 조정없이 100% 반영투찰토록 하되, **직접공사비** 하락 방지를 위해 **적격심사 입찰가격평가**시 해당금액을 예정가격 및 입찰가격에서 제외하고 평가
 - 근본적 문제개선을 위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 주체를 시공사에서 발주자로 변경 검토
- 국민연금 등 가입대상 확대에 따른 보험료 부담 증가관련 "진행 중인 공사"는 계약금액 조정 명확화 필요(계약예규 개정 또는 유권해석)

② 법정 근로시간 단축(68→52시간) 관련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기연장** 및 계약금액증액 명확화 (계약예규 개정 또는 행정지침 시달)

③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작업시간 단축 등) 관련

- 계약예규 등 규정에 **동 비상저감조치** 관련 공기연장, 계약 금액 조정, 제반비용 반영 명확화

공사비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제점>

예정가격 하락으로 실질낙찰률 하락 (적격심사제)

<개선방안>

낙찰하한률 10%p 상향 표준시장단가 적용배제

입찰제도상 낙찰률 하락 유인 (종합심사제)

덤핑방지 제도화로 경쟁낙찰률 정상화

공기연장 추가비용 미지급

공기연장 추가비용 적정지급

발주기관 불공정관행

공정한 계약관계 정착

제값주고 제대로 시공하는 환경 조성으로 시설물 품질제고·국민안전 확보·일자리 창출

공사비 정상화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공공공사 연간 기성액대비 5% 비용 만큼 공사비 이슈해결 시 사회경제적 피급효과 추산



공공공사 공사비 미지급

3조5,800억원해소





4만 7,500명

- 기술자: 1만 4,250명 - 기능인: 3만 3,250명
- 수도권: 1만 450명
- 비수도권: 3 만 7,050명



0.15%



1조 6,650억원



1조 1,800억원



1.25%

0.2%p

경제성장률 증가

"별도의 예산투입을 통한 신규사업 없이도 건설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달성 가능"

